

함박로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폐지 행정예고

함박로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6면이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에 의거 주·정차 금지구간에 해당하여 노상주차장 일부폐지를 추진함에 따라,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0. 10. 19.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1. 행정예고 할 내용 : 함박로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폐지
2. 행정예고 목적 : 함박로 일원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일부 6면이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에 의거 주·정차 금지구간에 해당하여 노상주차장 일부폐지를 추진함에 따라,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

3. 예고대상

구분	위 치	면 수	비 고
노상주차장 일부폐지	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 일원	6면	

※ 시행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4. 관련근거 :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(행정예고)
5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0. 10. 19. ~ 2020. 11. 7.(20일간)

6. 공고방법 :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yeonsu.go.kr/main/>)

7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수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내용

-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제출기관 :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

다. 제출방법

- 방문·우편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, 2층 교통행정과
※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.
- 전 화 : 032-749-8753
- 팩 스 : 032-749-8749
- 전 자 우 편 : baby842025@korea.kr

라. 제출기한 : 2020년 11월 7일(토) 까지

마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바. 공청회 개최 계획 : 없음.

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		
1. 행정예고 사업명		함박로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폐지
2. 당사자	성명(명칭)	
	주 소	(전화번호)
3. 대 상	의견대상	
	대상지역	
4. 제출의견	- 찬·반 의견과 그 이유 	
청솔로 121 노상주차장 일부폐지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: (서명 또는 인)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		

[붙임 1] 노상주차장 일부폐지 예정지역

○ 위치도 및 현황사진

연 번	위 치	폐지예정 주차면수	비고
1	함박로 일원	6면	



현장사진



현장사진

